

강원관광대학 교외출강에 관한 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원이사 규정 제4조 제2하에 의거하여 본 대학 전임 교원의 교외 출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- 제 2 조 (정의) 교외출강이라 함은 일정시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본 대학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술이나 직무훈련 등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교육을 담당함을 말한다.
- 제 3 조 (허가기준) 교외출강은 주당 환산 시수가 본 대학의 담당 책임 시간 수의 0.5배를 초과하지 않을 때. 단 대학원강의와 특별한 경우에는 1배까지 허가 할 수 있다.
- 제 4 조 (허가) 교외출강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출강의 시작으로부터 5일 이전에 <별지 1호>에 의한 허가원을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를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 5 조 (교외출강 금지 자) 책임시간이 감축되는 보직교원과 책임 시간에 미달되는 교원은 교외출강을 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장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 6 조 (무단 출강자 조치) 허가 없이 무단 교외 출강한 교원에 대해서 학장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지 1호 >

교 외 출 강 허 가 원

학과장	부장	처장	학장

성 명 : _____
직 위 : _____
직 급 : _____
소속학과명 : _____

본인은 다음과 같이 교외 출강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출 강 기 관 명 :
2. 출강 기과의 소재지 :
3. 출 강 기 간 :
4. 강 위 과 목 :
5. 강위요일 및 교시 : ()요일, (-)교시
6. 주 당 시 간 :
7. 칩 부 :

위본인 (인)

강 원 관 광 대 학 장